

우리나라의 화재보험 요율제도해설 (Ⅲ)



김 영 옥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부장〉

1. 화재보험 요율검증상의 실적사업비율과 사업비 배분방법

손해보험의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비율은 보험종목별로 그 예정사업비율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예정사업비율도 미래를 예측하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기경과사업연도중 최근 1년간의 영업 연도를 기준으로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사업비의 구분은 일본, 미국 등 외국의 경우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인 면에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업비 구분은 사업경비, 대리점수수료, 이재조사비, 기타 경비

로 나누어 지고 있다.

한편 사업비의 구분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비 분류형태 (사업비목의 종류별 분류)

- 1) 사업경비
 - 인건비 { 고유비 (직접고유비)
 - { 공통비
 - { 물건비
- 2) 대리점 수수료
- 3) 손해조사비
- 4) 기타 경비

나. 사업비의 보험종목별 배분방법

- 1) 고유비는 해당종목에 직접배분(이 경우 고유비는 1개 보험종목에 직접 지급된 경비임)
- 2) 공통비 배분은 다음과 같음.

① 각 사의 실정에 맞는 기준에 의해 배분

② 각 사가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 보험종목에 배분하는 기준은,

- ┌ 원수보험료 실적 기준 : 25%
- ├ 원수계약 건수 기준 : 25%
- └ 직무분석 결과 : 50%

○ 사업방법서상 세부종목의 배분은,

- ┌ 물건비 : 계약건수 기준 비례배분
- └ 인건비 : 보험료 기준 비례배분

2. 화재보험 요율검증상의 이윤율

이윤율은 보험회사의 적정이익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 5%로 인가하여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비상 위험과 이익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5%를 이윤율로 책정하고 있다.

3. 화재보험요율과 관련 법규

보험상품 및 가격에 대한 인가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우선 보험업법 제5조와 제7조에서 보험사업의 허가는 물론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등의 인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181조에 의거 기초서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한국보험공사내에 보험요율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재무부장관의 기초서류 변경인가권중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요율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합의한 사안에 대한 기초서류의 변경인가 [보험업법 제209조 및 재무부 보일 1223-388(79. 5. 17)]나 기존 상품의 보험요율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험공사에 위임하되 [재무부 보일 1233-1215(80. 12. 26)] 다만 기존상품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의 전반적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신규상품화될 경우는 재무부장관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 업무자율화 확대를 위하여 동업타사에 기 인가된 사항등에 대하여는 한국보험공사에서 인가의제 조치사항으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공사 심의이 520-584(82. 2. 13) 및 심의이 520-1097(83. 3. 12)]

4. 화재보험요율과 요율산정기관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손해보험의 요율산정을 위하여 1983년 12월에 설립된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의 정관 제9조에는 요율산정의 대상을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및 기타보험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보험종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산정대상종목을 정한 경우 재무부 및 한국보험공사에 보고하고 회원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정대상종목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회원사로부터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무부에서는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설립을 계기로 모든 손해보험사업자는 요율산정회가 산정토록 결정된 보험종목에 대한 요율의 산정(요율의 제정 또는 기준요율의 일부수정 포함)은 요율산정회로 하여금 산정케 하도록 하고 요율산정에 관련된 기초통계 및 관련자료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무부 보이 1234-322(84. 5. 9)]

참고로 현재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의 산정대상종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정관상 종목

- 1) 화재보험
- 2) 해상보험 -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송보험
- 3) 자동차보험 (단, 외화표시보험 제외)
- 4) 보증보험 - 신원보증보험, 크레디트카드보험, 가계수표보험

나. 기타 지정종목

- 1) 배상책임보험
- 2) 근재보험
- 3) 도난보험
- 4) 가정생활보험
- 5) 주택상공종합보험
- 6) 동산종합보험

다. 기타 필요한 종목

라. 특례 : 경쟁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제외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요율제도 중 기본적인 화재보험의 약관과 요율의 관계, 요율의 종류, 요율의 일반원칙, 구성, 요율검증제도 및 이에 관련된 제반법규를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화재보험요율서상의 제반 통칙, 규정 및 각 물건별 요율을 개술하고자 한다. <계속>